

제403회 정례회
'22. 9. 19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7일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사유

-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도정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정비(안 제6조)
 - (현행) 공공혁신분과위원회 등 11개 분과
 - (개정)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도정 주요 정책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6조에서는 공공혁신분과위원회 등 11개 분과를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로 변경하는 것으로,
 - 도지사는 도정 주요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서 민·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¹⁾ 및 동 조례에 따라 도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고,
 - 이는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더욱이 행정자치부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²⁾을 통해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,
 -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정비함으로써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 및 동 조례에 따라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로 개정한 것으로, 법적·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.

1)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2) 행정자치부 2015. 9. 10 보도자료(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-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,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-) 참고.

- (유사·중복 위원회)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는 통·폐합하되,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
- (비효율 위원회) 유형별로 구분하여 폐지, 존속기한 설정, 협의체로 전환,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